



의안번호	제 2013 - 2호
의 결 연 월 일	2013. 2. 4. (제46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12
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29
III.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치 결과 보고	30
1. 개요	30
2.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회신의견 종합	31
IV.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결과 보고	53
1. 공청회 개요	53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53
V.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55
1. 개요	55
2. 관련 규정	55
3. 공개 방법	56
4. 추진 일정	56

VI.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경과 보고	57
1. 현황 및 개선사항	57
2. 추진 경과	58
 V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59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59
2. 서면 질의 및 회신	59
□ 별첨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접수

○ 제1기, 제2기 및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기간 동안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2. 10. 31.)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10월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0	0	2	2	4
	강도살인	0	0	16	14	30
	강도살인미수	0	0	9	7	16
	살인	184	336	273	253	1,046
	살인교사	0	0	0	1	1
	살인미수	269	434	422	297	1,42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11	8	19
	존속살해	20	23	35	24	102
	존속살해미수	7	17	17	8	49
	전체	480	810	785	614	2,689
뇌물 범죄	뇌물공여	309	745	557	351	1,962
	뇌물공여교사	0	0	0	2	2
	뇌물수수	168	458	405	360	1,391
	부정처사후수뢰	12	32	17	15	76
	수뢰후부정처사	10	40	21	11	82
	제3자뇌물교부	14	52	31	8	105
	제3자뇌물취득	4	36	50	20	110
	특가법(뇌물)	57	141	126	103	427
	전체	574	1,504	1,207	870	4,155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10월	전체
성 범 죄	강간	98	195	202	178	673
	강간살인	2	2	1	0	5
	강간상해	91	189	174	136	590
	강간치사	0	2	0	2	4
	강간치상	198	342	275	235	1,050
	강도강간	20	17	11	15	63
	강제추행	427	951	1,225	1,327	3,930
	강제추행상해	17	37	46	26	126
	강제추행치상	75	134	110	93	412
	미성년자의제강간	8	22	13	21	6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3	4	1	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4	28	23	4	7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2	0	2
	상습강제추행	0	0	1	4	5
	상습준강제추행	0	0	1	1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59	275	72	40	646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5	5	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73	72	9	6	160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06	70	4	10	190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66	63	31	13	173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16	14	6	4	40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87	116	36	16	35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46	49	14	8	1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45	60	34	3	14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5	10	1	1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7	17	10	4	38
	성폭력범죄(특수강간)	206	184	50	22	462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131	89	37	31	288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10월	전체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23	18	4	0	45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49	63	9	3	124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260	370	157	78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0	0	169	16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0	0	0	4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0	0	0	15	1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0	0	0	5	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0	0	0	6	6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83	132	118	33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92	165	91	34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0	0	0	46	4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0	0	0	35	3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64	137	80	28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0	0	0	16	1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0	0	0	4	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0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0	0	0	14	1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12	13	24	4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90	264	219	67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33	70	62	16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37	71	73	18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11	7	1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5	9	21	3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185	357	202	74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72	123	45	24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16	50	43	10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51	139	80	270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10월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1	8	4	13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785	1,077	649	2,51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0	0	0	185	18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0	0	0	24	2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0	0	0	19	1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0	0	0	10	1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0	0	0	11	1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0	0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0	0	0	42	42
	준강간	38	111	93	86	328
	준강간상해	0	0	0	1	1
	준강간치상	4	14	15	12	45
	준강제추행	75	165	170	161	571
	준강제추행상해	0	0	0	2	2
	준강제추행치사	0	0	1	0	1
	준강제추행치상	3	1	7	2	13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05	89	0	0	394
	특가법(강도강간)	0	0	1	0	1
	전체	2,609	5,295	5,689	4,951	18,544
강 도 범 죄	강도	103	154	140	117	514
	강도교사	0	0	0	2	2
	강도살인	21	36	10	0	67
	강도상해	484	690	577	494	2,245
	강도상해교사	0	0	0	1	1
	강도치사	1	8	5	5	19
	강도치상	32	47	53	32	164
	준강도	57	90	97	37	281
	준특수강도	7	16	10	12	45
	특가법(강도)	8	12	10	2	32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10월	전체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6	9	13	11	39
	특강법(특수강도)	2	0	0	0	2
	특수강도	322	554	605	336	1,817
	전체	1,043	1,616	1,520	1,049	5,228
횡령 · 배임 범죄	배임	376	582	437	336	1,731
	업무상횡령	1,520	2,784	2,376	1,722	8,402
	특경가법(배임)	150	333	410	192	1,085
	특경가법(횡령)	195	513	522	218	1,448
	횡령	1,434	2,574	2,095	1,403	7,506
	전체	3,956	7,436	6,414	4,281	22,087
위증 범죄	모해위증	12	18	13	22	65
	모해위증교사	0	0	0	1	1
	위증	862	1,408	1,098	852	4,220
	위증교사	50	229	173	102	554
	전체	924	1,655	1,284	977	4,840
무고 범죄	무고	1,143	2,081	1,851	1,162	6,237
	무고교사	0	0	0	9	9
	특가법(무고)	6	7	6	4	23
	특가법(무고)교사	0	0	0	1	1
	전체	1,149	2,088	1,857	1,176	6,270
총계		10,735	20,404	18,756	13,918	63,813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2. 10. 31.)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10월	전체
약 취 · 유 인 범 죄	간음약취	0	2	2
	미성년자약취	8	13	21
	미성년자유인	4	10	14
	영리약취	0	2	2
	영리유인	1	2	3
	추행유인	1	1	2
	특가법(약취.유인)	5	14	19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24	27	51
	전체	43	71	114
사 기 범 죄	사기	17,599	27,233	44,832
	상습사기	75	115	190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1	1	2
	준사기	15	9	24
	컴퓨터등사용사기	127	251	378
	특경가법(사기)	526	546	1,072
	전체	18,343	28,155	46,498
절 도 범 죄	문화재보호법위반	15	22	37
	산림보호법위반	29	37	6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09	190	299
	상습절도	1	1	2
	상습특수절도	0	2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95	476	7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0	2	2
	야간방실침입절도	35	51	86
	야간선박침입절도	2	0	2
	야간주거침입절도	254	297	551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0	1	1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10월	전체
	절도	3,344	5,424	8,768
	절도교사	0	15	15
	특가법(산림)	41	17	58
	특가법(절도)	1,120	1,678	2,798
	특수절도	1,811	2,717	4,528
	특수절도교사	0	1	1
	전체	7,056	10,931	17,987
공 문 서 범 죄	공문서변조	36	91	127
	공문서변조교사	0	1	1
	공문서부정행사	177	464	641
	공문서부정행사교사	0	2	2
	공문서위조	157	310	46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70	443	713
	공전자기록등위작	6	17	2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69	173	242
	변조공문서행사	10	2	1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34	0	3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	1	21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29	14	43
	허위공문서작성	29	27	56
	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0	8
	전체	847	1,545	2,392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25	105	130
	사문서변조	41	24	65
	사문서부정행사	3	5	8
	사문서위조	697	1,212	1,909
	사문서위조교사	0	2	2
	사전자기록등변작	4	5	9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10월	전체
	사전자기기록등위작	17	19	36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2	0	2
	위조사문서행사	142	35	17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5	47	7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7	0	7
	허위작성진단서행사	2	3	5
	허위진단서작성	8	5	13
	전체	973	1,462	2,435
공 무 집 행 방 해 범 죄	공무집행방해	2,930	4,705	7,635
	공무집행방해교사	0	1	1
	공용건조물파괴	0	3	3
	공용물건무효	1	2	3
	공용물건손상	336	530	866
	공용물건은닉	1	1	2
	공용서류무효	4	9	13
	공용서류손상	31	49	80
	공용서류은닉	2	3	5
	위계공무집행방해	123	239	362
	특수공무집행방해	138	287	4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07	113	220
	특수공용물건손상	6	8	14
	전체	3,679	5,950	9,629
식 품 · 보 건 범 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38	92	13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6	16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69	442	7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39	211	3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4	0	4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2	3
	식품위생법위반	788	1,011	1,799
	약사법위반	161	281	442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10월	전체
	의료법위반	520	574	1,094
	의료법위반교사	0	1	1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2	1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35	47	82
	화장품법위반	9	17	26
	전체	1,976	2,685	4,661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75	552	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31	30	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665	2,579	4,24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208	362	570
	특가법(마약)	0	1	1
	특가법(향정)	5	7	12
	전체	2,184	3,531	5,715
총계		35,101	54,330	89,431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2. 10. 31.)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10월	전체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49	49
	증권거래법위반	12	12
	특경가법(수재등)	7	7
	특경가법(알선수재)	30	30
	특경가법(증재등)	6	6
	전체	104	104
지식재산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10	1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67	6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9	9
	상표법위반	354	354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10월	전체
	실용신안법위반	2	2
	저작권법위반	274	274
	특허법위반	7	7
	전체	723	723
폭 력 범 죄	상습폭행	1	1
	상해	5,643	5,643
	상해치사	42	42
	존속상해	38	38
	존속중상해	1	1
	존속폭행	10	10
	존속폭행치상	1	1
	존속협박	6	6
	중상해	19	19
	특가법(운전자폭행등)	253	253
	특수존속협박	1	1
	특수폭행	18	18
	특수폭행치사	1	1
	특수협박	30	30
	폭처법(공동상해)	1,579	1,579
	폭처법(공동상해)교사	1	1
	폭처법(공동폭행)	334	334
	폭처법(공동협박)	32	32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3	3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3	3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3	3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10	10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10월	전체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2	2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	1
	폭처법(상습상해)	31	31
	폭처법(상습존속폭행)	4	4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1	1
	폭처법(상습폭행)	26	26
	폭처법(상습협박)	8	8
	폭처법(야간.공동상해)	2	2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833	1,833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5	5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11	11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2	2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6	6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387	387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536	536
	폭행	1,946	1,946
	폭행치사	21	21
	폭행치상	66	66
	협박	268	268
	협박교사	1	1
	전체	13,188	13,188
교통 범 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795	3,795
	특가법(도주차량)	1,880	1,880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241	1,241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10월	전체
	전체	6,916	6,916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479	479
	전체	479	479
총계		21,410	21,410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제1기, 제2기 및 제3기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2. 10. 31.까지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제1심 법원 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2. 10.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년 하반기	살인범죄	수	286	0	0	286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46	73	1	120
		비율	38.3%	60.8%	0.8%	100.0%
	성범죄	수	960	96	60	1,116
		비율	86.0%	8.6%	5.4%	100.0%
	강도범죄	수	563	1	0	564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횡령·배임범죄	비율	99.8%	0.2%	0.0%	100.0%
		수	101	990	286	1,377
		비율	7.3%	71.9%	20.8%	100.0%
	위증범죄	수	6	310	41	357
		비율	1.7%	86.8%	11.5%	100.0%
	무고범죄	수	6	252	92	350
		비율	1.7%	72.0%	26.3%	100.0%
	전체	수	1,968	1,722	480	4,170
		비율	47.2%	41.3%	11.5%	100.0%
2010년	살인범죄	수	736	0	0	736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548	512	15	1,075
		비율	51.0%	47.6%	1.4%	100.0%
	성범죄	수	3,294	366	269	3,929
		비율	83.8%	9.3%	6.8%	100.0%
	강도범죄	수	1,421	2	0	1,423
		비율	99.9%	0.1%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719	4,437	1,097	6,253
		비율	11.5%	71.0%	17.5%	100.0%
	위증범죄	수	41	1,272	192	1,505
		비율	2.7%	84.5%	12.8%	100.0%
	무고범죄	수	45	1,311	339	1,695
		비율	2.7%	77.3%	20.0%	100.0%
	전체	수	6,804	7,900	1,912	16,616
		비율	40.9%	47.5%	11.5%	100.0%
2011년	살인범죄	수	767	0	0	767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뇌물범죄	비율	100.0%	0.0%	0.0%	100.0%
		수	652	261	18	931
		비율	70.0%	28.0%	1.9%	100.0%
	성범죄	수	3,558	403	299	4,260
		비율	83.5%	9.5%	7.0%	100.0%
	강도범죄	수	1,354	0	0	1,354
		비율	100.0%	0.0%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1,060	4,183	984	6,227
		비율	17.0%	67.2%	15.8%	100.0%
	위증범죄	수	20	1,064	233	1,317
		비율	1.5%	80.8%	17.7%	100.0%
	무고범죄	수	89	1,287	360	1,736
		비율	5.1%	74.1%	20.7%	100.0%
	전체	수	7,500	7,198	1,894	16,592
		비율	45.2%	43.4%	11.4%	100.0%
2012년 1월~10월	살인범죄	수	562	1	0	563
		비율	99.8%	0.2%	0.0%	100.0%
	뇌물범죄	수	527	313	14	854
		비율	61.7%	36.7%	1.6%	100.0%
	성범죄	수	3,178	739	500	4,417
		비율	71.9%	16.7%	11.3%	100.0%
	강도범죄	수	1,076	7	0	1,083
		비율	99.4%	0.6%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858	2,761	933	4,552
		비율	18.8%	60.7%	20.5%	100.0%
	위증범죄	수	23	701	249	973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무고범죄	비율	2.4%	72.0%	25.6%	100.0%
		수	29	833	295	1,157
		비율	2.5%	72.0%	25.5%	100.0%
	전체	수	6,253	5,355	1,991	13,599
		비율	46.0%	39.4%	14.6%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2. 10.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년 하반기	약취·유인범죄	수	9	1	0	10
		비율	90.0%	10.0%	0.0%	100.0%
	사기범죄	수	334	4,501	1,686	6,521
		비율	5.1%	69.0%	25.9%	100.0%
	절도범죄	수	371	2,685	581	3,637
		비율	10.2%	73.8%	16.0%	100.0%
	공문서범죄	수	18	166	101	285
		비율	6.3%	58.2%	35.4%	100.0%
	사문서범죄	수	15	276	117	408
		비율	3.7%	67.6%	28.7%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93	1,151	694	1,938
		비율	4.8%	59.4%	35.8%	100.0%
	식품·보건범죄	수	17	172	628	817
		비율	2.1%	21.1%	76.9%	100.0%
	마약범죄	수	125	1,099	33	1,257
		비율	9.9%	87.4%	2.6%	100.0%
	전체	수	982	10,051	3,840	14,873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비율	6.6%	67.6%	25.8%	100.0%
2012년 1월~10월	약취·유인범죄	수	65	18	0	83
		비율	78.3%	21.7%	0.0%	100.0%
	사기범죄	수	1,457	17,295	6,326	25,078
		비율	5.8%	69.0%	25.2%	100.0%
	절도범죄	수	1,081	7,827	2,068	10,976
		비율	9.8%	71.3%	18.8%	100.0%
	공문서범죄	수	133	644	347	1,124
		비율	11.8%	57.3%	30.9%	100.0%
	사문서범죄	수	81	827	504	1,412
		비율	5.7%	58.6%	35.7%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347	2,359	2,281	4,987
		비율	7.0%	47.3%	45.7%	100.0%
	식품·보건범죄	수	44	569	1,843	2,456
		비율	1.8%	23.2%	75.0%	100.0%
	마약범죄	수	447	2,660	51	3,158
		비율	14.2%	84.2%	1.6%	100.0%
	전체	수	3,655	32,199	13,420	49,274
		비율	7.4%	65.3%	27.2%	100.0%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2. 10.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2년 7월~10월	증권·금융범죄	수	4	10	5	19
		비율	21.1%	52.6%	26.3%	100.0%
	지식재산범죄	수	1	110	180	29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폭력범죄	비율	0.3%	37.8%	61.9%	100.0%
		수	223	2,207	2,799	5,229
		비율	4.3%	42.2%	53.5%	100.0%
	교통범죄	수	474	1,600	1,162	3,236
		비율	14.6%	49.4%	35.9%	100.0%
	선거범죄	수	56	17	0	73
		비율	76.7%	23.3%	0.0%	100.0%
	전체	수	758	3,944	4,146	8,848
		비율	8.6%	44.6%	46.9%	100.0%

※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시행 사건에 해당함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2. 10. 31.)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10월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0	0	0	1	1
	강도살인	0	0	8	10	18
	강도살인미수	0	0	11	5	16
	살인	105	315	270	222	912
	살인미수	170	382	435	271	1,258
	살인미수교사	0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6	4	10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0	0	0	1	1
	존속살해	7	26	26	28	87
	존속살해미수	4	13	11	17	45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단체등의살인)	0	0	0	2	2
	전체	286	736	767	563	2,352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10월	전체
뇌 물 범 죄	뇌물공여	59	558	447	350	1,414
	뇌물공여교사	0	0	0	1	1
	뇌물수수	46	280	282	321	929
	부정처사후수뢰	2	26	18	6	52
	수뢰후부정처사	2	27	20	12	61
	제3자뇌물교부	3	50	20	14	87
	제3자뇌물취득	4	32	31	26	93
	특가법(뇌물)	4	102	113	124	343
	전체	120	1,075	931	854	2,980
성 범 죄	강간	38	128	127	147	440
	강간살인	1	0	2	0	3
	강간상해	49	175	181	123	528
	강간치사	0	2	0	1	3
	강간치상	104	313	256	195	868
	강도강간	4	24	10	14	52
	강제추행	127	548	655	1,089	2,419
	강제추행상해	11	39	47	28	125
	강제추행치상	40	115	112	89	356
	미성년자의제강간	3	16	12	18	49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4	1	3	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9	19	16	7	5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1
	상습강제추행	0	0	0	2	2
	상습준강제추행	0	0	0	1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4	302	92	40	558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4	3	1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0	83	14	6	143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10월	전체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0	90	5	3	148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0	0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7	82	30	13	152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11	18	4	7	40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5	168	31	14	32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	57	17	9	10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3	69	26	12	13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	7	4	2	1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	10	10	3	27
	성폭력범죄(특수강간)	91	165	45	28	329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60	132	38	31	261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1	21	3	0	35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	54	12	3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0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54	307	222	68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0	0	84	8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0	0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0	0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0	0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0	0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1	1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0	110	96	246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0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59	105	94	258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0	0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0	0	0	22	2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0	0	0	17	17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10월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27	109	102	23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0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9	14	16	3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7	246	172	555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0	0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1	55	56	13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6	67	51	144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7	9	1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13	15	3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56	228	203	48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45	112	76	23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7	30	41	7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7	62	74	15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0	5	4	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419	866	808	2,093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0	0	0	78	7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0	0	0	3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0	0	0	2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0	0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0	0	0	3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0	0	0	18	1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0	0	0	1	1
	준강간	7	56	49	80	192
	준강간치상	2	10	10	11	33
	준강제추행	32	104	92	152	380
	준강제추행상해	0	0	0	2	2
	준강제추행치사	0	0	1	0	1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10월	전체
	준강제추행치상	1	3	4	5	13
	청소년성보호법	1	0	0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0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92	88	5	0	185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0	0	0	1	1
	전체	1,116	3,929	4,260	4,417	13,722
강 도 범 죄	강도	66	159	136	101	462
	강도살인	10	33	20	0	63
	강도상해	238	570	548	394	1,750
	강도치사	1	4	9	4	18
	강도치상	15	54	45	29	143
	준강도	43	92	94	44	273
	준특수강도	8	14	9	10	41
	특가법(강도)	4	12	10	10	36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9	15	9	35
	특강법(특수강도)	0	1	0	0	1
	특수강도	177	475	468	482	1,602
	전체	564	1,423	1,354	1,083	4,424
횡 령 · 배 임 범 죄	배임	111	513	464	333	1,421
	업무상배임	71	439	484	366	1,360
	업무상횡령	602	2,484	2,356	1,690	7,132
	특경가법(배임)	27	190	254	310	781
	특경가법(횡령)	33	334	492	399	1,258
	횡령	533	2,293	2,177	1,454	6,457
	전체	1,377	6,253	6,227	4,552	18,409
위 증 범	모해위증	3	14	18	13	48
	위증	296	1,260	1,098	856	3,510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10월	전체
죄	위증교사	58	231	201	104	594
	전체	357	1,505	1,317	973	4,152
무 고 범 죄	무고	349	1,687	1,729	1,146	4,911
	무고교사	0	0	0	5	5
	특가법(무고)	1	8	7	6	22
	전체	350	1,695	1,736	1,157	4,938
총계		4,170	16,616	16,592	13,599	50,977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2. 10. 31.)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10월	전체
약 취 · 유 인 범 죄	간음약취	0	1	1
	미성년자약취	0	13	13
	미성년자유인	2	11	13
	영리약취	0	1	1
	영리유인	0	1	1
	특가법(약취.유인)	2	7	9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6	49	55
	전체	10	83	93
사 기 범 죄	사기	6,284	23,979	30,263
	사기교사	0	2	2
	상습사기	36	107	143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0	2	2
	준사기	4	17	21
	컴퓨터등사용사기	74	315	389
	특경가법(사기)	123	656	779
	전체	6,521	25,078	31,599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10월	전체
절 도 범 죄	문화재보호법위반	4	14	18
	산림보호법위반	6	37	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28	143	171
	상습절도	9	7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43	427	5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0	1	1
	야간방실침입절도	17	47	64
	야간선박침입절도	0	1	1
	야간주거침입절도	128	315	443
	절도	1,742	5,081	6,823
	절도교사	0	10	10
	특가법(산림)	10	16	26
	특가법(상습절도)	0	2	2
	특가법(절도)	689	1,825	2,514
	특수절도	861	3,046	3,907
	특수절도교사	0	3	3
	전체	3,637	10,975	14,612
공 문 서 범 죄	공문서변조	16	60	76
	공문서변조교사	0	1	1
	공문서부정행사	56	242	298
	공문서부정행사교사	0	1	1
	공문서위조	63	219	282
	공문서위조교사	0	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00	415	5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0	1	1
	공전자기록등위작	3	6	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2	117	139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10월	전체
	변조공문서행사	2	2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0	3	3
	위조공문서행사	5	22	27
	허위공문서작성	18	33	51
	허위공문서행사	0	1	1
	전체	285	1,124	1,409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1	4	5
	사문서변조	12	73	85
	사문서부정행사	3	2	5
	사문서위조	351	1,228	1,579
	사문서위조교사	0	3	3
	사문서위조행사	1	0	1
	사전자기록등변작	0	5	5
	사전자기록등위변작	0	2	2
	사전자기록등위작	12	10	2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15	37	52
	위조사서명행사	0	2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8	43	51
	허위진단서작성	4	3	7
	전체	408	1,412	1,820
공 무 집 행 방 해 범 죄	공무집행방해	1,530	3,772	5,302
	공용건조물파괴	2	0	2
	공용물건무효	1	1	2
	공용물건손상	201	539	740
	공용물건손상교사	0	2	2
	공용물건은닉	1	0	1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10월	전체
	공용서류무효	2	7	9
	공용서류손상	16	49	65
	공용서류은닉	3	1	4
	공용전자기록등손상	0	1	1
	위계공무집행방해	36	212	248
	특수공무방해치상	0	1	1
	특수공무집행방해	88	260	3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53	131	184
	특수공용건조물파괴	0	1	1
	특수공용물건손상	5	10	15
	전체	1,938	4,987	6,925
식품·보건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5	60	7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6	3	9
	농수산물위생관리법위반(부정의료업자)	171	432	6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80	198	2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0	1	1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1	1
	식품위생법위반	277	948	1,225
	약사법위반	77	228	305
	의료법위반	171	506	677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2	2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0	56	66
	화장품법위반	8	21	29
	전체	817	2,456	3,273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62	361	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3	26	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940	2,434	3,374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10월	전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32	329	461
	특가법(마약)	0	1	1
	특가법(향정)	0	7	7
	전체	1,257	3,158	4,415
총계		14,873	49,273	64,146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2. 10. 31.)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10월	전체
증권· 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6	6
	증권거래법위반	2	2
	특경가법(수재등)	2	2
	특경가법(알선수재)	8	8
	특경가법(증재등)	1	1
	전체	19	19
지식 재산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4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2	2
	상표법위반	172	172
	실용신안법위반	1	1
	저작권법위반	110	110
	특허법위반	2	2
	전체	291	291
폭 력 범 죄	상해	2,294	2,294
	상해치사	10	10
	존속상해	18	18
	존속중상해	1	1
	존속협박	3	3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10월	전체
	중상해	3	3
	집단흥기등폭행	1	1
	특가법(보복범죄등)	18	18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12	112
	특수존속협박	1	1
	특수폭행	6	6
	특수협박	14	14
	폭처벌(흥기등협박)	4	4
	폭처벌(공동상해)	603	603
	폭처벌(공동폭행)	125	125
	폭처벌(공동협박)	5	5
	폭처벌(단체등의공동협박)	1	1
	폭처벌(상습상해)	17	17
	폭처벌(상습존속폭행)	3	3
	폭처벌(상습폭행)	17	17
	폭처벌(상습협박)	5	5
	폭처벌(야간·공동상해)	2	2
	폭처벌(집단·흥기등상해)	662	662
	폭처벌(집단·흥기등상해)교사	2	2
	폭처벌(집단·흥기등존속상해)	3	3
	폭처벌(집단·흥기등존속폭행)	1	1
	폭처벌(집단·흥기등존속협박)	4	4
	폭처벌(집단·흥기등폭행)	121	121
	폭처벌(집단·흥기등협박)	214	214
	폭처벌(집단·흥기등상해)	6	6
	폭처벌(집단·흥기등폭행)	2	2
	폭처벌(집단·흥기등협박)	1	1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10월	전체
	폭처법(흥기등상해)	11	11
	폭처법(흥기등협박)	4	4
	폭행	797	797
	폭행치사	6	6
	폭행치상	17	17
	협박	116	116
	전체	5,230	5,230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782	1,782
	특가법(도주차량)	811	811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643	643
	전체	3,236	3,236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73	73
	전체	73	73
총계		8,849	8,849

※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시행 사건에 해당함

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64차	2013. 1. 28. 16:00	○ 제8차 공청회 제기 쟁점 검토 ○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내용 검토

Ⅲ.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따라 대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2013. 1. 23. 기준)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45차 회의(2012. 12. 17.)에서 의결한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나. 조회 기간 : 2012. 12. 18. ~ 2013. 1. 18.

다. 회신 기관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 34개의 조회 대상 기관 중 6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포럼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 25개의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 27개의 조회 대상 기관 중 3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라. 회신자료

- 별첨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2.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회신의견 종합

◆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조세범죄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조세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하는 양형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양형기준 제시에 적극 찬성함
- 일반 조세포탈 범죄의 3유형과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의 1유형 사이,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3유형과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2유형 사이에서는 권고형량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권고형량이 일부라도 겹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액수만 따지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동일하고 객관적 양형조건의 핵심이 액수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하고, 검사가 결정하는 적용법조만으로 권고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문제일 수 있음
-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적당한 부분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예를 들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의 권고형량을 이탈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인지, 병과형에서의 권고형량이 징역형만의 권고형량과 동일한지 등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 필요 있음

- ▶ 실무상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명의대여자와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례가 많고, 이 경우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를 다소 감경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 ▶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는 실업주가 따로 있고 속칭 바지사장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지사장을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요소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주와의 '조직적 범행'으로 보아 가중요소로 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함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할 필요 있음
 - ▶ 각종 범죄와 관련하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는 바, 이것이 형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교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수교사의 경우 장기 또는 다액의 1/2을 가중하게 되어 있어 양형가중요소로 삼는 것과 불일치가 생길 수 있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는 가중요소에 포함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을 감경요소로 하는 외에 이를 가중요소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
 - ▶ 특히, 조세범죄의 경우 전형적인 범행형태가 대표자 또는 상급자의 지시로 조세포탈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수수 등을 하는 것인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가중요소로 삼는다면, 대부분의 조세범죄는 가중유형에 포섭될 우려가 있음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양형인자를 추가할 필요 있음
 -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과 관련하여 특별감경인자 중 행위요소로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를 추가하고, 일반감경인자 중 행위자요소로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이 바람직함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특별가중인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유형(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위반 범죄)은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수에 따라 제1유형(30억 원 미만),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3유형(50억 원 이상)으로 나누고, 그 가중요소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에서 그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수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위 제2, 3유형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
 -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경우 ‘영리의 목적’이 범죄의 구성요소로 되어있으므로,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서 가중요소로 되어있는 ‘영리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범죄의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에 대한 평가가 같은 지, 다른 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음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공무원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공무원의 경우 자신에게 부과될 조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어서 범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다시 집행유예 부정사유로 보는 것은 형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집행유예 부정사유로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특별감경인자인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 조세포탈범죄의 경우 특별감경요소인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의 의미를 포탈세액 중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나, 2/3 이상의 납부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포탈조세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서도 그 기준을 1/2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나. 법무부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
 - ▶ 상습성의 발로에 기인한 범죄라면 비록 이번의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치더라도 행위자의 신분적 특성을 감안,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당연함
 - ▶ 기존의 다른 범죄군(성범죄, 사기범죄, 마약범죄 등)에서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일반가중요소로 설정된 ‘거래 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인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과의 균형상 특별가중요소로 설정함이 타당

다. 대한변호사협회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양형구간에서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과 200억 원 이상을 하나의 양형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 구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또한 법정형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에 비추어 이를 양형구간 설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이 지금까지 법관들이 선고해 온 형량을 경험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규범적으로 양형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입법자가 규정한 법정형의 범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한계를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고, 한편 양형구간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함으로써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재벌 등에게 관대한 판결을 선고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는 부분에 반대함

▶ 법률상 그와 같이 가중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특가법 자체가 이미 일반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을 상당히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가중유형을 설정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음

▶ 또한 만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자신의 조언이 탈세를 유도하는 행위라거나,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계획적, 조직적 범행가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이미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하게 되

어 있으므로 여기에 다시 직업적 요소로 특별가중을 한다면 이
중가중에 해당하게 됨

-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 있어서 상습성의 발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가중요소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범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는 사정만으로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취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함
- ▶ 적극설과 소극설의 논거가 모두 불분명함
- ▶ 적극설은 상습적 행위와 일회적 행위 사이에 차등을 두어야 한
다고 주장하지만, 상습범 인정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표지는
당해 범죄의 횟수가 아니라 그 범죄 행위가 범죄자의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냐 이고, 또한 이미 기존의 양형기준에서 가
중적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러 범죄유형을 일반
범죄유형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양형기준이 시행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음
- ▶ 또한 소극설의 논거인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이 없다는 논거 역
시 양형기준의 취지는 법률에 가중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
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다 무
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유
형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함
- ▶ 상습범에 대하여 특별한 교정프로그램이 아닌 보다 무거운 처
벌을 과하는 형법의 기본적 태도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살펴보
면 ‘상습범’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상습범이란 범죄
습벽의 발현 여부가 중요한 표지이지 다수 행위의 반복이 중

요한 표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적극설과 같이 단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취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특별가중요소로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는 ‘상습범’의 경우이고, ‘상습범’이 아니라 단지 동종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한 경우는 이른바 ‘영업범’의 속성으로서 이는 일반 가중요소로 존치하여야 할 것임

- 조세범죄의 경우 가중요소로 ‘계획적·조직적 범행’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지휘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지휘자 역시 정범의 형태로 범죄에 관여하게 될 것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조직적 범행에 해당하게 될 것이어서 동일한 하나의 표지가 2개의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마련하거나, 하나의 양형인자로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와 ‘포탈한 세액 중 일정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가 각각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데, 포탈한 세액 중 3분의 2이상이 징수된 경우를 가정한다면 양자는 포탈한 세액의 회수라는 결과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고, 체납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느냐 여부의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인자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라는 질적 차이가 있는 양형인자로 구별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임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유형에서 일반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중단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역시 잘못 적용될 우려가 매우 큰 요소이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

여'라는 제한문구를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일반적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사례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당해 업체와 거래를 끊고 새로운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더러, 그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모두가리지 아니하고 가중요소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있어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설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중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및 50억 원 이상은 각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유형으로서 이를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의 가중양형인자로 설정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 ▶ 특가법의 구성요건규정이 명백하므로 과연 어떤 경우에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조세포탈범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영리를 목적으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과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일반 조세포탈 범죄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계속적·반복적 범행'의 의미가 불명확함
 - ▶ 예컨대, 연속범, 영업범 등 위 인자가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 기준과 함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

담'은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소극가담'에 개념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기타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등은 형법상의 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마. 한국세무사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일반 조세포탈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 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 위 내용과 같은 가중요소는 ① 세무사 등이 납세의무자와 조세포탈 범행의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 당해 세무사 등에 대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인지, ㉡ 납세의무자에 대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인지, ㉢ 납세의무자와 세무사 등 모두에게 양형 중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인지, 또는 ② 공범관계의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에 대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에 의할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행위 등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별개의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조세포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행위자 또는 그 공범에 대해 양형가중요소를 둔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임
 - ▶ 만약 세무사 등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되

는 것이라면, 세무사 등의 신분 그 자체에 가중요소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들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및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만을 가중요소로 할 필요가 없음

- ▶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허위신고 행위 및 그에 대한 선동, 교사행위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 세무사법 제22조에서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자동적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고(벌금형 없음) 그 법정형도 조세범처벌법에 비해 현저히 가중되어 있으며 또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에서는 어떠한 범죄로도 금고 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끝난 날로부터 1년, 선고유예는 그 선거유예기간 동안 등록취소가 되며(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 별도의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음
- ▶ 따라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은, 동일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나, 세무사법 또는 특가법 등에 의해 이미 그 형이 가중되어 있음에도 동일 행위에 대해 다시 양형가중요소로 참작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이중의 처벌을 하는 결과가 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으므로 위 가중요소는 조세포탈에 대한 양형가중요소에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됨
- 일반 조세포탈 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상습범인 경우’는 양형가중요소에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4항이 상습적으로 조세포탈을 범한 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양형
가중사유를 적용하게 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사실상 이중의 불
이익을 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의 특별가중요소인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은 양형가중요소에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은 세무사 등이 허위세금계산서 발
급의 알선,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공범의 행위로 감경하여 처
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그 행위자
가 세무사 등인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행위를
다시 양형가중요소로 적용하게 되면 이미 정범보다 가중한 법정
형을 규정하고 다시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세무사 등에게 사실상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
으며, 위 양형가중요소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

- 특별가중요소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사 등
에 대해 계속적 위임관계의 중단 및 기타 협박, 강요, 위계 등의 방
법으로 위법행위를 강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에 대해 이를
감경하는 한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는 양형기준이 마련
될 필요가 있음

○ 기타 의견

- 조세범죄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① 양형이 가중되어야 할 행위가 정
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명
확하지 않고, ② 이미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가중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시 가중하게 하여 사실상 이중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바. 한국조세연구포럼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일반양형인자에서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양형인자의 정의에는 ‘진지한 반성’의 예시가 누락되어 있음

◆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

- 공갈죄의 경우 유형 구분상 금액 중 3,000만 원 미만이 제1유형으로 정해져 있으나, 공갈범행의 경우 그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보아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1,000만 원 미만을 제1유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일반공갈 유형의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은 대부분 사기범죄 양형기준보다 형량범위가 높은데도 감경영역만 사기범죄와 동일하게 보는 불균형이 존재함
 - ▶ 공갈범죄의 행위태양이 사기범죄보다 위험요소가 많고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피해액 기준)중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은 하한의 일부가 사기범죄와 같을 뿐 대부분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사기범죄보다 높음에도 유독 감경영역의 하한과 상한은 대부분 사기범죄와 동일한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한 것은 공범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저한 손해의 회피 등 특별히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현저한 손해의 회피 등 특별히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의 예로는 피해자로 인하여 보증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특별가중인자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추가함이 바람직함
 -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공갈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로 하고 있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갈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이를 추가할 필요 있음
- 특별가중인자 중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는 행위 요소로 볼 수 없고, 범죄수익을 사후적으로 처분한 것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의문임
 - ▶ 양형인자 정의 중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의 반대말과 다를 바 없어 공갈범죄는 가중영역에 해당하거나 감경영역에 해당하거나 둘 중 하나의 영역이 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액을 소비한 경우보다 은닉한 경우를 가중하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생각됨
- 뇌물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갈하는 경우 뇌물죄와 공갈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어느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데(상상적 경

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동종 전과’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범죄들의 경우에도 ‘동종 전과’가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다보면 피고인의 전과 중 어느 범위까지 동종 전과로 보아야 할 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음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 공갈범죄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로 함으로써 사기죄에서 일반참작사유로 한 것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기죄와 달리 정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정 점포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미합의된 경우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갈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집행유예에 대한 주요참작사유 부정요소가 3개, 주요참작사유 긍정요소가 1개로서 실형을 권고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명령을 붙여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
 - ▶ 또한 실제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 또는 반복적 공갈 범행 중 다수 사건은 식당 운영자들,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에 대한 공갈범행으로서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는데, 같은

유형의 사기범행보다 통상적으로 죄질이 더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법무부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특정 유형(예를 들어 일반공갈의 4유형, 또는 5유형)에서 감경, 기본, 가중 3개 영역에 선고형량이 중첩되는 구간이 있는데, 양형인자의 영역 결정 능력을 감소시키고, 양형기준 자체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의 법정형(5년 이상)과 상습, 누범, 특수공갈의 법정형(3년 이상)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동일한 형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 상습공갈범죄군도 이득액의 다과에 따라 형량 범위를 비례적으로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양형기준안은 ‘공무원의 지위,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직무상 권한행사를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행위요소적 인자에 행위자적 요소를 포함킨 것으로써, 체계 부적합하므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대한변호사협회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일반공갈 유형5(피해액 50억원 이상)의 감경형량 상한(7년)과 가중형

량의 하한(7년)이 일치하는 현재의 양형기준대로라면 징역 7년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한 형량만 가지고는 그 형량이 감정에 의한 형량인지 가중에 의한 형량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양형구간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감경상한과 가중하한에 다소라도 차이를 두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는 실제 사례에 있어서 중첩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
 - ▶ 동일한 표지의 행위요소를 이중적으로 가중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의문을 부기하거나, 차라리 후자를 전자의 한 유형으로 예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에 있어서도 후자는 전자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어 별개의 양형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므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의문을 두거나, 후자를 전자의 한 예시유형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공갈의 정도는 가해자의 행위요소인데 비하여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피해자 측의 사정 또는 행위의 결과로서 상호 성격이 다르므로, 양형인자의 정의에 있어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예시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둔 것은 부적절하고, 이를 별개의 감경요소로 규정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의 예시로

‘고소, 고발 등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위법하지는 않은 경우’를 두고 있는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은 아니라는 대법원판례를 고려할 때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위법하지는 않은 경우’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를 감경인자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다소 초과한 경우’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양형인자의 정의에 있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공갈 · 누범공갈 · 특수공갈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두고 있는데 당해 행위태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으로 양형기준상 특수공갈로 분류되는 것인데 과연 특수공갈을 제외하고 어떤 행위태양이 여기에 해당할 것인지 의문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일반사기나 조직적 사기에 있어서는 일반 양형인자의 행위, 가중요소로 규정하였으나, 일반공갈이나 상습공갈 등에 있어서는 특별양형인자의 행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양형요소라면 통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과 형량은 적절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가중요소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인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는 모든 범죄의 양형기준에 공통된 의견임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적극 찬성함
- ▶ 공갈범죄는 특성상 만취상태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기준안과 같이 만취상태에서의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동안 음주에 필요 이상으로 관대하였던 우리의 문화와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한 만취상태에서의 범죄를 엄벌하는 것은 강력범죄를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임
- ▶ 그 동안 만취상태를 심신미약 등으로 인정하여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실제로 만취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실제 현실이므로 이번 기준안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은 아마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방화 후 진화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는 특별가중인자가 아니라 일반가중인자로 하는 것이 상당함
 -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들고 있고, 그 예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들고 있음
 - ▶ 그런데 실제 방화 사건을 심리하다보면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여서, 이러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한다면 권고형의 범위가 너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는 특별양형인자보다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방화범죄는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이른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통상 치료감호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화범죄에 있어서 감경요소인 심신미약상태를 ‘본인 책임 없음’의 경우와 ‘본인 책임 있음’ 경우로 구분하지 말고 ‘심신미약상태’ 전부를(본인책임 여부로 구분하지 말고) 특별감경요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물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구체적 경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

-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다만 살인죄의 하한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하한이 높으므로 양형기준 역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하한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있어서 결합범 형태의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관한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는 우리 양형기준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임
 - ▶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전체적 대조주의를 몰각한 것이며, 중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형법 제40조의 문언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양형기준에서 이 잘못된 판례를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 ▶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중한 죄인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처단하되, 그 하한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하한인 7년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적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형기준 역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살인의 고의가 없이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방화죄의 양형기준에 규정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극단적 인명경시의 경우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현주건조물방화살인’의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는 방화죄 부분의 양형기준에, 후자는 살인죄 부분의 양형기준에 규율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임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치사죄 유형2(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중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의 감경형량 상한(10년)과 가중형량의 하한(10년)이 일치하는 현재의 양형기준대로라면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한 형량만 가지고는 실제 도출된 형량이 감경에 의한 것인지 가중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므로 감경상한과 가중하한에 다소라도 차이를 두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치사죄의 특별감경양형요소인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분의 정의 중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거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와 특별가중양형요소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부분의 정의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평가관점에 따라 감경요소도 될 수 있고 가중요소도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정의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보복, 원한, 증오감에 의한 범죄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보복이나 원한 또는 증오감이 발생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이를 감경요소로 적용할 것인지 가중요소로 적용할 것인지 의문이므로 가능한 한 정의부분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구체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도 있음
 - ▶ 예컨대, 위 인자가 연속범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한 상 위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갈범죄와 마찬가지로,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은 아마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다고만은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 의미가 제시되어야 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양형인자 중 별도의 감경요소로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함

IV.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3. 1. 21.(월) 14:00~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제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 참석자 : 총 80여 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 : 여상훈, 이건리, 이상원, 이연주, 하태훈, 임성근(상임위원)
 - 전문위원 : 구회근(수석전문위원), 이주원, 조석영, 주용완, 최형표, 함석천
 - 일반 시민, 기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 임성근 상임위원
- 발표자 : 구회근 수석전문위원
- 조세범죄 지정토론자
 - 신호영(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주현(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최창희(변호사)
- 공갈범죄 지정토론자
 - 김재봉(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지연(변호사)
- 방화범죄 지정토론자
 - 강수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숙희(변호사)

V.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13. 2. 4. 양형위원회 제46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13. 2. 중순(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3. 2. 하순(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VI.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경과 보고

1. 현황

- 양형위원회는 현재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를 운영
- 기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는 단조로운 디자인과 화면 구성, 검색 기능 등 이용자 편의기능 부족, 양형기준제도와 양형위원회에 대한 설명·홍보 부족, 영문 홈페이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양형위원회가 정보의 공개와 홍보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었음
-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고, 아울러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위원회에 대한 홍보 기능도 개선하였음을 보고

2. 개선 사항

- 초기화면 및 각 메뉴 상세화면의 디자인과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시각적 효과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등 이용자가 홈페이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메뉴 구성을 추가하고 주요 세부 메뉴를 초기화면에 배너형태 등으로 현출하여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쉽게 도달하도록 개선
- 검색 기능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 기능을 추가하고,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자 기능을 신설
- 양형기준제도와 양형위원회를 홍보하는 내용의 콘텐츠 추가
- 영문홈페이지 구축 및 영문판 양형기준 등 영문자료 게시
- 웹 표준 이행 및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3. 추진 경과

- 2012. 6. 15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개선사업 계획(안) 보고
- 2012. 6. 15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결재
- 2012. 10. 12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사업자 선정
- 2012. 10. 22 : 계약 체결
- 2013. 1. 11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사업 완료 및 공개

Ⅶ.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순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3. 1. 16.	○ 성추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요청

○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민원인이 요청한 바와 같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가 판단할 대상이므로,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

2. 서면 질의 및 회신

○ 서면질의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2. 12. 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불만 의견 개진
2	2013. 1. 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불만 의견 개진(2012. 12. 27. 접수된 질의와 동일 질의인의 반복 질의)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사전에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1번 질의에 대한 회신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